

1. 개정이유

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·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0000.00.00.시행)됨에 따라 가점 대상 자격증 및 가점 비율을 정하는 한편,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(안 제23조)

- 1) 필기시험, 체력시험, 신체검사,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성 등 필요
- 2) “영 제43조제3항”을 “영 제17조의2”로 함

나.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(안 제23조)

- 1)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,
- 2)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

다.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서류 제출 관련 법령 정비(안 제28조)

- 1)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4조를 준용하여, 불필요한 제출서류는 삭제하고

2)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별표 6”을 “별표 2”로, “자격증의 소지자”를 “자격증 소지자를 말하고, 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”라 함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”로 한다.

제23조제7항 본문 중 “영 제43조제3항”을 “영 제17조의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응시서류의 제출등)”을 “(응시자의 제출서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해야 하며,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”를 “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에”로, “행정정보를 확인해야”를 “서류를 확인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합격자가”를 “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”으로, “않거”를 “아니하거”로, “그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제출하도록 해야”를 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

록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(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)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

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”을 “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”으로, “행정정보를 확인해야”를 “서류를 확인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험응시자”를 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”로, “않거”를 “아니하거”로, “그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제출하도록 해야”를 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⑤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(등급)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별표 4의 제목 중 “제23조제3항 관련”을 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

관련”으로 한다.

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(제24조 관련)	
가점비율 분야	1퍼센트
관련 분야	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

비고

1. 삭제
2. 삭제
3.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) ① (생 략) ②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“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 지자”라 함은 <u>별표 6에 의한 자 격증의 소지자</u> 를 말한다.	제19조(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<u>별표 2</u> ----- <u>자 격증 소지자</u> 를 말하고, “ <u>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</u> ”라 함은 <u>별표 4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u> ---.
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~ ⑥ (생 략) ⑦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 상태는 별표 5와 같다. 다만, 별 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 에 따른다. ⑧ · ⑨ (생 략) ⑩「 <u>국가공무원법</u> 」 또는 다른 <u>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.</u>	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영 제17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⑧ · ⑨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,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2. 삭 제

3.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

4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

5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통

6. 자격증 사본(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) 1통

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이하 “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

제28조(응시자의 제출서류) ①--

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-----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---

----- 서류를 확인하여야

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1. 가족관계증명서

2.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

3.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(소지자에 한한다)
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

----. -----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-----
----- 아니하
거-----
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
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
야 -----.

1.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(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)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-----

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(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1.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(소지자에 한한다)

3. · 4. (생략)

<신설>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

 --- 서류를 확인하여야 ----
 --. ---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-----
 ----- 아니하거-----
 -----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-----
 ---.

<삭 제>

<삭 제>

1. · 2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⑤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(등급)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⑥ -----
 제5항-----

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 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